

## 안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안면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출된 안면부 변형부위의 면적, 함몰이나 비후(돌출)의 정도 진단소견 기재</li> <li>※ 눈에 띄는 면상반흔, 색소침착, 탈색소질환, 모발결손, 조직의 비후나 함몰, 결손</li> </ul>
2. 검사결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칼라사진 :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것</li> <li>※ 얼굴, 이마, 목, 귀가 보이는 정면, 좌측, 우측 각 1장 이상, 최소 3장 필수 제출(A4용지 크기)</li> <li>- 함몰이나 비후 : 단순 x-ray, CT, MRI 등 영상의학검사 등</li> </ul>
3. 진료기록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과기록지, 입퇴원요약지, 수술기록지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: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간의 기록지</li> <li>※ 원인상병(진단명)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(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)</li> </ul>
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	
<p><b>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</b>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의 성형외과, 피부과 또는 외과(화상의 경우) 전문의</li> <li>- 의료기관의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(구강악안면외과)</li> </ul>	
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코 형태의 1/3 이상이 없어진 사람
- 노출된 안면부의 45%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
- 노출된 안면부의 30% 이상이 변형된 사람